

원격지 여비 세부 기준 개선

□ 원격지 여비지급 기준

○ 지급대상 :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실거주지와 신규 발령지가 편도 100Km 이상으로

배치받은 광역본부 소속 직원

- 거리기준 : 거주지-근무지 간 지도App 기준으로 자가용 최단거리로 적용

※ 거주지 주소 확인은 주민등록등본/초본 등 증빙 필요

- 제외대상 : 직책자, 체임발령자, 신입사원(채용지역 최초배치 후 2년간 미지급)

○ 지급기간 : 배치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지급 원칙

※ 기 수혜직원은 '24.7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(2년 경과자도 '24년 말까지 지급)

○ 지급 금액 : 이동거리에 따라 거리 구간별 차등 지급

100km 이상	150km 이상	200km 이상	예외지역(50Km~)
20만원/월	30만원/월	40만원/월	20만원/월

- 예외지역(안) 광역본부-인재실 간 선정된 피순환지역 ※ 변경 필요시 별도 협의

강북/강원	강남	서부	부산/경남	대구/경북	전남/전북	충남/충북
홍천/속초/동해등	평택/용인 등	이천/인천 등	진주/창원	안동/포항/구미 등	광주/전남 외곽	청주/충주/홍성

○ 지급절차

① 광역본부별 변경사항 공고(광역본부별 예외지역 명시 필요)

② 대상자는 광역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(주민등록등/초본 등 증빙서류 필요)

※ 실 거주지 변경에 따라 지출대상 제외 시 통보 필수, 수시 모니터링 예정

③ 광역본부 검토 후 문서시행 및 지급

○ 시행시기 : 2024.07.01(7월 급여일부터 지급)

- 시행일 이후 배치발령자에 한해 지원 적용(기 발령 대상자 소급 불가)